

-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21. 4.

행정건설위원회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일자 : 2021. 4.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써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 및 정보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기간은 8일간으로 한다. (2021. 6. 2. ~ 6. 9.)
-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및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으로 한다.
- 감사반 편성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8명)으로 한다.
- 감사장소는 행정건설위원회실, 동주민센터 등으로 한다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제5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등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1. 6. 2.(수) ~ 6. 9.(수) [8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구본청(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 동주민센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4.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 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건설 위원회	행정건설 위원회 위원 전원 (8명)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교통건설국	행정건설 위원회실	유준상	권하나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최국모	이상은
		동주민센터		해당 동주민센터	유준상

5. 감사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21.6.2.(수)	○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1.6.3.(목)	○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 총 무 과 - 자치행정과 - 홍 보 과 - 청소행정과 - 민원여권과 - 전산정보과	
2021.6.4.(금)	○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과 - 재 무 과 - 징 수 과 - 세 무 1 과 - 세 무 2 과 - 부동산정보과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2021.6.7.(월)	○ 관광일자리국 행정사무감사 - 관 광 과 - 일자리지원과 - 문화예술과 - 지역경제과 - 생활체육과	
2021.6.8.(화)	○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 건설관리과 - 도 로 과 - 치 수 과	
2021.6.9.(수)	○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사무감사 ○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 감사종료 선언	

6. 감사요령

감사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의 각 과 및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별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감사 진행순서

- 가. 감사실시 선언
- 나. 위원장 인사
- 다. 증인선서
- 라. 피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마. 업무보고 청취
- 바. 질의·답변
- 사. 감사종료 선언

8. 행정사항

- 가.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 승인을 득하고 감사관련 자료를 수합한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 다. 사정에 따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 감사반 변경,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감사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